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회 목적 내 실시 명문화〉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11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희 · 박덕흠 · 박성민 · 구자근 · 백종현 · 최은석
박성훈 · 권영세 · 서천호 · 임이자 · 배준영 · 강명구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 의안번호 : 36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u>부득이한 사유</u> 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 ----- ----- ----- <u>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권이 편중되어 있어 인사가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학연·지연에 입각한 정실인사 또는 편중인사 등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15대국회 이전부터 국회가 행정

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인사청문회가 논의되었음.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타 기관을 견제·통제할 뿐만 아니라,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임.

그러나 최근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면서 개인과 가족에 관한 과도한 의혹 제기, 인신공격 등 여·야간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목적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제적으로 개정안은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에 규율하고 있으나, 동 개정내용은 실체적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추상적·선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이념규정¹⁾을 신설하거나 현행법 제4조²⁾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 1) 법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의 본질적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다음에 두며 조 제목으로는 ‘기본이념’, ‘기본원칙’, ‘기본방향’ 등이 사용되고 있음.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이와 관련한 입법례는 아래와 같음.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 ⑥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 2) 「인사청문회법」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